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성공적인 경제총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조사실시기관에 해당하는 지자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자체의 경총 수행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상위 법령인 통계법과 동법 시행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조사사항 등의 문구를 변경하고, 시범예행조사 실시 근거 마련, 조사구 변경 사유 현실화, 안전용품 지급 근거 강화, 자문위 활동 범위 구체화 등을 통해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조사실시기관인 지자체 명시(제2조)

조사실시기관의 정의에 해당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여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명확화

나. 조사방법 변경(제6조)

경제총조사는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모집단인 우리나라 산업활동 사업체 전수에 대한 경제활동 상황을 최종 산출물로 작성하므로 통계법 제5조의4 (총조사의 실시)에 의거하여 표본조사 부분 삭제

다. 시범예행조사 근거 신설(제6조의2)

경제총조사의 효율적인 수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험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험조사 중 최종 단계인 시범예행조사 실시에 관한 근거를 별도로 신설하여 시범예행조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라. 조사구 변경 사유 현실화(제8조)

행정기관(행정동) 및 관할구역(법정동) 변경(신설, 통·폐합 등) 시 조사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사유 현실화

마. 조사요원 안전용품 지급 규정 변경(제11조)

조사요원의 신변 보호,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한 필수 안전용품의 지급 규정의 예산 제한 문구를 삭제, 주체를 조사실시기관으로 수정

바. 자문위원회 자문범위 구체화(제16조)

자문위원회의 자문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자문위원회 활동에 대한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2025.06.27.~2025.07.10.)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자를”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로 한다.

제6조의1항 중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전수조사”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시험조사”를 “시험조사 또는 시범예행조사”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행정구역의 경계가”를 “행정구역이”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조사실시기관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를 “조사실시기관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 및 제7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작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 및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사결과 자료활용의 확대, 홍보·협력 방안 등 통계청장이 성공적인 경제총조사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 략)</p> <p>4. "조사실시기관"이란 제17조에 따라 경제총조사에 관한 통계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u>자</u>를 말한다.</p> <p>5.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u>----</p> <p>5. (현행과 같음)</p>
<p>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 경제총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를 단위로 하여 <u>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u>로 실시한다.</p> <p>② ~ ④ (생 략)</p>	<p>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 ----- ----- -----<u>전수조사</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의2(조사의 보완) ① 통계청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사사항 및 조사단위·방법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인 총조사 수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u>시험조사</u>를 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6조의2(조사의 보완) ①----- ----- ----- ----- <u>시험조사 또는 시범예행조사</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관리) ① (생 략)</p> <p>② 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p>	<p>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다.</p> <p>1. <u>행정구역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u></p> <p>2. 3. (생략)</p> <p>③ (생략)</p>	<p>----- ----- -----.</p> <p>1. <u>행정구역이</u>-----</p> <p>2. 3.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조사요원) ①·② (생략)</p> <p>③ <u>조사실시기관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해야 한다.</u></p>	<p>제11조(조사요원)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조사실시기관은</u>----- ----- -----.</p>
<p>제16조(자문위원회) ① <u>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 및 제7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작성에 관한 통계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청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u></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② (생략)</p>	<p>제16조(자문위원회) ① <u>다음 각 호의 사항</u>----- ----- ----- -----.</p> <p>1. <u>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u></p> <p>2. <u>제6조에 따른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u></p> <p>3. <u>제7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 및 작성에 관한 사항</u></p> <p>4. <u>그 밖에 조사결과 자료활용의 확대, 홍보·협력 방안 등 통계청장이 성공적인 경제총조사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② (현행과 같음)</p>